즉시 배포용: 8/17/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레지오넬라 병 퇴치를 위해 뉴욕주 차원의 비상조치 법규를 발표하다

새로운 비상조치 법규로 레지오넬라의 확산을 막고 뉴욕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다

질문에 답변하고 새로운 법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핫라인(1-888-769-7243) 설치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보건부가 레지오넬라 박테리아의 확산을 막고 향후 레지오넬라 질병 발발로부터 뉴욕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조치 법규를 채택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이런 종류의 뉴욕주 법규 중 최초의 법규로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이 비상조치 법규의 틀은 뉴욕시장실과 시위원회 대표의 상의로 초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주지사는 보건부가 엔지니어, 기술자 및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제기하는 본 법규 관련 문의사항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일반 팁 전화(1-888-769-7243)를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여름의 레지오넬라 질병 발발은 뉴욕주 커뮤니티에서 우려를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향후 이 질병의 발발 가능성을 막고 우리 이웃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비상조치 법규로 건물주들은 자신들의 의무에 따라 행동하고 보건관계자들에게 레지오넬라 박테리아의 확산에 맞설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 안심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대처하고 있으며, 뉴욕주 전역에서 보건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보건부장관 Dr. Howard Zuck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레지오넬라 질병 발발로 냉각탑이 지목되었습니다. 냉각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레지오넬라 질병으로 이어지는 레지오넬라 균이 과증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규는 이를 예방하고 모든 뉴욕주민들의 건강, 특히 레지오넬라에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법규는 냉각탑 등록, 테스트, 검사 및 인증을 요구합니다. 이 법규는 이러한 요건을 위한 기간과 프로세스를 지시합니다. 모든 건물주들은 이 새로운 법규가 요구하는 조치사항을 등록 및 보고하기 위해 전 뉴욕주 전자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법규를 요약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정의 & 등록 – 새로운 법규는 냉각탑을 건물의 냉각, 산업용 처리, 냉장 또는 에너지 생산 시스템으로 통합된 재순환 물 시스템의 일부인 탑, 증기복수기 또는 유체냉각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냉각탑을 보유한 건물의 주인은 이 탑을 30일 내에 주 보건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 후, 모든 새로운 냉각탑은 등록을 완료한 후 첫 사용에 들어가야 합니다. 냉각탑을 뉴욕주에 등록할 때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양 표본 테스트 & 탑 살균 – 냉각탑을 보유한 건물의 주인은 표본을 수집하고 30일 이내에 배양 테스트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 후, 테스트는 매 90일 간격으로 수행하거나 또는 건물주가 마련한 건물 유지 프로그램과 계획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배양 표본 테스트 결과 살균이 필요한 경우 즉시 살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물 유지 프로그램 & 계획 – 냉각탑을 보유한 건물의 주인은 2016년 3월 1일까지 건물 유지 프로그램 및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 계획안에는 정기적인 샘플링 일정, 긴급상황 발생 시 테스팅 및 레지오넬라 박테리아 박멸을 위한 살균 절차가 포함됩니다. 건물주는 냉각타이 자리한 곳의 계획안 사본을 작성하고 요청을 받은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검사 & 인증 – 모든 냉각탑은 30일 이내에 그후 90일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모든 냉각탑은 2016년 11월 1일까지 모든 규제 요건을 준수하여 인증을 받고, 이후 매년 11월 1일마다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 등록 & 보고– 냉각탑 등록은 뉴욕주 전자 시스템을 통해 이뤄집니다. 등록 외에도, 새로운 법규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치사항에 대해 조치가 이뤄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 시스템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집행 & 벌금– 보건부 또는 현지 보건부 관리, 직원 또는 대리인은 본 법규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건물이든 들어가 냉각탑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자신의 냉각탑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인증, 검사, 청소 또는 살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보건부 또는 현지 보건부는 이를 방해행위로 간주하여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법규 위반 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건물주가 어떤 조항을 위배한 경우 이 조항의 개별 위반 및 명확한 위반을 매일 저지른 것이 됩니다.

본 비상조치 법규는 90일 동안 효력을 가지며, 90일 이후 영구적인 법규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90일 동안 이 법규는 수정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후 영구 법규가 됩니다.

보건부는 건물주와 관리인이 정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링크는 본 법규 요건 이행 시 건물주와 관리인과 함께 건물을 관리할 자격이 되는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물처리 전문가: http://www.awt.org/find_water_treatment_professional/
- 면허 받은 엔지니어: http://www.op.nysed.gov/prof/pels/pecounts.htm
- 산어위생전문가: http://www.abih.org/about-abih/public-roster
- 연구실: http://www.wadsworth.org/labcert/elap/elap.html
- 인증 농약 살포기 및 사용전문가: http://www.dec.ny.gov/permits/209.html (within larger database)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